# 자가도축 금지 문제, 해법 보인다

## - 농림부, 본회 요구안 수용할 듯 -

올 1월1일부터 발효된 사슴 자가도축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양록농가에 한가닥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생산자 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도축장을 통한 정식 도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여론이 들끓자 농림부가 서둘러 대안 마련에 나선 것. 특히 본회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농장내 간편 작업장 시설 마련을 통한 자가도축 허용 안을 농림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있다.

본회는 지난해부터 "영세농가의 소득 증대 일환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농장자체 중탕가공 판매, 또는 소비자 그룹단위 농장방문 구매가 중단되어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농장내 자가중탕 가공의 경우 자가소비의 개념으로 인정하여 자가도축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다만 농장내 간이 도축 작업장 및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도축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은 바 있다.

최근 농림부는 ▲ 전국적으로 중탕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수 ▲ 해당 농가의 연월별 도축 마리수 ▲ 농장내 간이 도축장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수 등의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라고 주문, 본회의 요구안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본회는 자료 제출과 더불어 농장내 간이 도축장 시설 설치시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도록 간편화 시설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등도 건의할 예정에 있다.

농림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이미 2월초부터 감지됐다. 농림부는 생산자 단체의 반발 및 법 시행 문제점이 여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자 2월 8일자 공문을 통해 "도축장에서 도축이 불가능한 가축은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의무도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금번 법 시행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부분 시인했다.

또한 지난 2월14일에는 의무도축 확대에 해당되는 8개 축종 단체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실시하고 대책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본회 성 락 사무총장은 "도축장을 이용한 사슴 도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영세농가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농장내 자가도축 시설 구비를 통한 대안 마련, 혹은 법 집행 유예기간 마련이 사슴농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본회는 향후 농림부가 요청한 중탕기 설치 농가 및 농장내 간이도축장 시설 설치 요구 농가 등의 자료 제출은 물론, 도축관련 법령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국양록